

Human Information

: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

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,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·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. 이 시리즈는 <산업안전보건법 제·개정사>(2015, 고용노동부)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.

정리 대외홍보팀

산업안전보건법의 제·개정 요지(11)





3. 조항별 제·개정 연혁 및 개정 내용

제1차 개정('90. 1. 13)

개정사유

근로자대표, 작업환경측정, 안전·보건진단, 중대재해 등 전문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
- 중대재해 정의를 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함

개정내용

제3호 : 사업을 →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

제4호 : 신설

4. “근로자대표”라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,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

제5호 : 신설

5. “작업환경측정”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·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6호 : 신설

6. “안전·보건진단”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·평가를 말한다.

제7호 : 신설

7. “중대재해”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.

제9차 개정('99. 2. 8)

개정사유

「근로기준법」에서 “근로자대표”를 개정내용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, 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’에서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노동관계법령의 규정과 맞추기 위함

개정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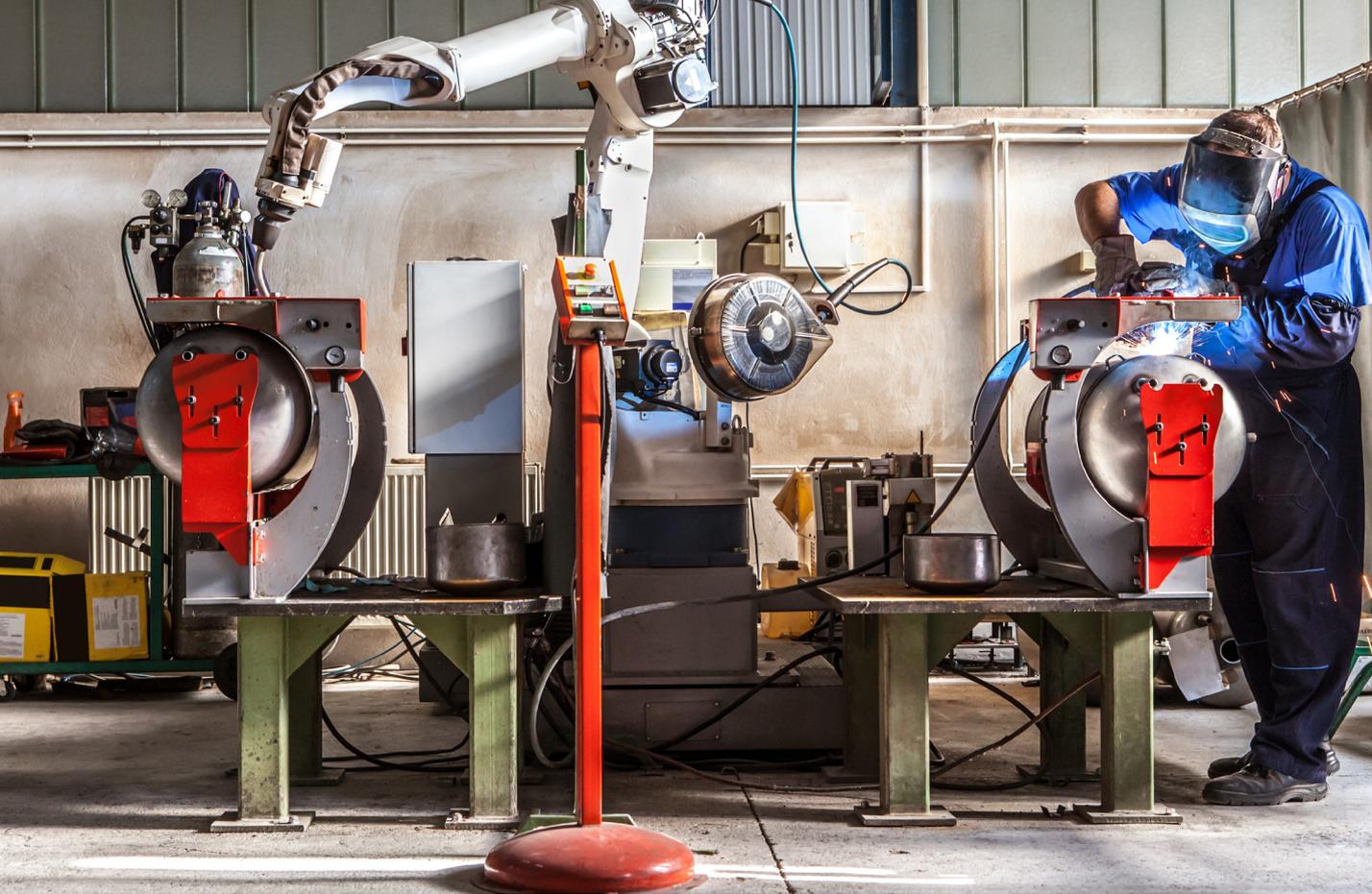
제2조 제4호 : 전문개정

4. “근로자대표”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

제17차 개정('07. 4. 11)

개정사유

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



개정내용

제2호 : 근로기준법 제14조의 → 근로기준법 제2조의

제24차 개정('09. 2. 6)

개정사유

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개정내용

본문 : 정의는 → 뜻은

제1호 : “산업재해”라 함은 → “산업재해”란 / 분진등 → 분진 등 /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→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/ 이환되는 → 걸리는

제2호 : “근로자”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→ “근로자”란 근로기준법 제2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

제3호 : “사업주”라 함은 → “사업주”란 / 행하는 → 하는

제4호 : “근로자대표”라 함은 → “근로자대표”란

제5호 : “작업환경측정”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→ “작업환경측정”이란 작업환경 /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·평가를 하는 → 수립한 후 시료(試料)를 채취하고 분석·평가하는

제6호 :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→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/ 실시하는 → 하는

제7호 : “중대재해”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→ “중대재해”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/ 노동부령이 → 노동부령으로

제28차 개정('10. 6. 4)

개정사유

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
로 변경함에 따라 부처명칭 등 관계 조문의 용어 정비

개정내용

제6호 : 노동부장관 → 고용노동부장관

제7호 : 노동부령 → 고용노동부령

제3조(적용범위)

제3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
사업장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 다만,
유해·위험의 정도, 사업의 종류·규모 및 사
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
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
명령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
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
용한다.

제정('81. 12. 31)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
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 다만, 사업의 종
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
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
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1차 개정('90. 1. 13)

개정사유

유해·위험의 정도에 따라 사업의 종류·규모 및 사
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적용의 전부 또는 일
부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

개정내용

제1항 단서 : 다만,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
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
지 아니한다. → 다만, 유해·위험의 정
도, 사업의 종류·규모 및 사업의 소재
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
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
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2항 :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도
→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이를

제24차 개정('09. 2. 6)

개정사유

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
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
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
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개정내용

제1항 : 소재지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
업에 대하여는 →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

제2항 : 이 법에 의한 → 이 법에 따른 / 정부투자기
관에 이를 →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